

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

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자료관리관은 경매구입, 현지구입 절차 참여시 필요한 경우 제4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제3항의 사항을 심의·결정토록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구입결과 등 주요사항을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8조(자료수집심의위원회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④ ~ ⑦ (생 략)</p>	<p>제48조(자료수집심의위원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자료관리관은 경매구입, 현 지구입 절차 참여시 필요한 경 우 제4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서 제3항의 사항을 심의·결정토 록 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구 입결과 등 주요사항을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⑤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)</p>